

#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4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8. 24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## 1. 개정사유

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중 일정규모 미만인 시설을 소규모급수시설로 분류하여 관리함에 개정법령의 내용에 부합되게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량 관리하기 위함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·관리하기 위한 정비계획수립(안 제3조)
- 나.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사항 의무화(안 제6조 및 제7조)
- 다. 간이급수시설의 재해 또는 사고시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과 용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수립(안 제9조 및 제10조)
- 라. 간이상수도 시설폐지 사유 발생시 협의회 의견 수렴하여 폐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)
- 마. 사용자로부터 간이상수도 요금징수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- 바.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·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2조)

## 3. 참고사항

근거법령 및 자료

- 0. 수도법 제32조제2항(간이상수도 관리등 - 조례위임)
- 0. 수도법 제38조의2(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 - 조례위임)
- 0. 수질58442-10940('99. 11. 22), 수질58442-10351(2000. 03.16)  
- 간이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관리 표준안
- 0. 입법예고 - 특기할 사항 없음.

## 4. 본 문 : 붙임과 같음

#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

## 제 1 장 총 칙

제명 “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”를 “고성군간이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”로 한다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(이하 “간이급수시설”이라 한다)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①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.

②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3의2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

③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당해지역의 군수를,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시설단위별 사용자대표협의회(이하 “대표자”라 한다)를 말한다.

④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.

⑤사용자대표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.

제3조(정비계획의 수립) ①군수는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·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

②군수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상수도 중·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

## 제 2 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

제4조(시설의 관리)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, 개·보수,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·관리 일체를 관장한다.

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·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, 보관하여야 한다

제5조(취수원의 보호 등)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입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
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질검사) ①군수는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(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,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제4조)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

제7조(점검)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·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·보존하여야 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

②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 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개선조치) ①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9조(유지보수) ①군수는 수원의 오염,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·보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간이급수시설의 개·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단, 광역상수도 공급가능구역에 위치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 개·보수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②관리자는 개·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,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0조(긴급복구 및 비상급수) 군수는 태풍, 홍수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 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대비 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시설의 폐지) ①군수는 수질오염,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회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상수도 공급등으로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 
②군수가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(건강진단) 군수는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### 제 3 장 관 리 비 용

제13조(관리비용)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(요금징수)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회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고성군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.

제15조(계량기) ①관리자는 운영·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.

## 제 4 장 사용자 대표협의회

제16조(설치) ①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,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.

제17조(구성) ①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.

②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.

③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.

④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8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.

1. 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
2.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
3.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, 수질 이상 발견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
4.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
5.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
제19조(회의개최)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.

1.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
2.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
3.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## 제 5 장 보 칙

제20조(교육)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·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.

제21조(관리의 위탁) ①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·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, 위탁기간,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,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2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## 간이급수시설 관리대장(제4조제2항관련)

관리번호	시(군) 제 호									
구분	항 목	내 역								
일반현황	위 치	도 시·군 읍·면 리 마을								
일반현황	협의회대표자	성 명								
	준공년월일	년 월 일								
투자현황	총투자액 (만원)	구 분	내 역	일 자	국고보조	지 방 비	주민부담	기 타		
		최초사업비			자재지원	현금지원	시도비	시군비		
		시설개량								
		1차								
		2차								
		3차								
		수원이전 계								
시설현황	수원의종류	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								
	시설의유형	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 송 식 ④ 기 타								
	취수시설	보유시설	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							
		시설내역	구 분	제 원			시 설 상 태		특 기 사 항	
							양호	불량		
			집수정 1							심도: m
			집수정 2							심도: m
	양수모터1						마력			
	양수모터2						마력			
	정수시설	보유시설	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							
시설내역		구 분	제 원			시 설 상 태		특 기 사 항		
						양호	불량			
		소독설비								
		침전지								
여과지										
배수지										
송배수관로	구 분	송 수 관 로			배 수 관 로			관 종 별 총연장(m)		
		관 종	직 경	연 장	관 종	직 경	연 장			
	소 계		mm	M		mm	M			
	소 계		mm	M		mm	M			
	소 계		mm	M		mm	M			
총 계			M			M	총계: M			
급수현황	계 획	급수인구: 명	급수가구: 가구	1인당1일급수량: 리터						
	현 재	급수인구: 명	급수가구: 가구	1인당1일급수량: 리터						
	제한 급수	1차:	2차:	3차:	계: 일간					
수질검사	검사 시설	취수원	배수지	수도꼭지	검사기관	( 개항목)				
	합격 여부				검사일시					
개량내역	개량 일자	개량시설명	소요액(만원)	시공자	개 량 내 용					
수원이전	이전 사유				이전일자	소요비용	만원			
	이전 위치									

※ 시설폐지시는 뒷면에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

[별지 제2호 서식]

## 간이급수시설 정기점검 대장(제7조제1항 관련)

관리번호	시(군) 제 호	점검일자 : . . . . .	점검자 : 소속	직	성명
점 검 항 목		점 검 결 과	조 치 사 항		
○ 취수원의 보호 · 관리상태					
○ 침전지의 운영 · 관리상태					
○ 여과지의 운영 · 관리상태					
○ 배수지의 운영 관리상태					
○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					
○ 소독시설의 운영 · 관리상태					
오염물 제거	취수원부근				
	배수지부근				
기 타					

\* 매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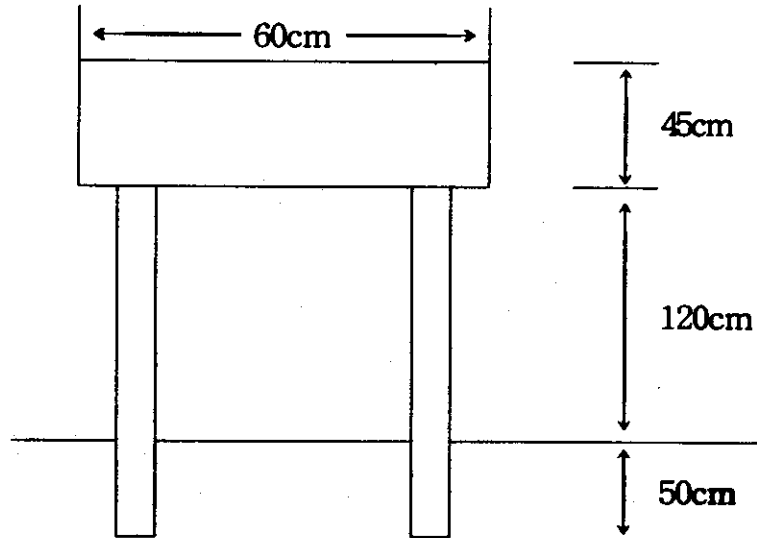


## 간이급수시설 수시점검 대장(제7조제1항 관련)

관리번호	시(군) 계 호	점검일자 :	점검자 : 소속 직 성명
점 검 항 목		점 검 결 과	조 치 사 항
○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			
○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(분뇨, 퇴비, 쓰레기장 등)의 유무			
○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물질(공장폐수 등)의 유무			
○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			
○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			
○ 외관(냄새, 색, 탁도)의 양호여부			

<별표1> 간이급수시설 안내판 (제5조1항 관련)

## 간이급수시설 안내판



재질 및 두께 : 5mm내외의 스테인레스 재질

바탕 색 : 흰 색

글씨 : 청 색

### ○ 내용문

#### 알 림

1. 이곳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(또는 소규모급수시설) 취수원입니다.
2.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관리번호 :

○ 위치 :

○ 시설용량 :

※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시 연락처 : 고성군 ○○과(전화 : )